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24
----------	------

발의연월일 : 2017. 1. 17.

발의자 : 문미옥 · 한정애 · 김경진  
박광온 · 신경민 · 김정우  
추혜선 · 김성수 · 윤관석  
김병기 · 김현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

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p> <p>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p> <p>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p>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